

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

의 안 번 호	28
--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해바른·김형우·정지광·
조희옥·박성준·하서영·
박미정·오지환·정순용
의원(9명)

1. 주문

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- 출석일자 : 2026.09.04.(금) / 2026.09.10.(목)
- 출석대상 :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
※ 관계공무원 등은 『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』 제48조에 따름
- 출석이유 : 구정질문 및 답변
- 출석장소 : 서초구의회 본회의장

2. 제안이유

-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
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¹⁾

○ 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48조²⁾

-
- 1)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- 2) 제48조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**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6.>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2. 6., 2022. 1. 13.>
1. 부구청장
 2.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·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
 3. 법 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
 4.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
 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
-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「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」 서명부

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
김 해 바 른.	
김 형 우	김형우
정 지 령	정지령
조 현 옥	조현옥.
정 성 훈	정성훈
하 서 명	하서명.
박 미 령	박미령
오 지 려	오지려
최 춘 영	최춘영